

제319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2025. 6. 17(화)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창훈



#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0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667호
- 발 의 일: 2025년 6월 5일
- 발 의 자: 신달호 의원 등 4인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2. 제안사유

- 최근 기후변화와 농촌 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 생산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달성군 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군수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스마트농업 관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 변화와 농촌 인력 부족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달성군 내 스마트농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스마트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기반으로 농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신기술 농업 방식으로,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제2조), 군수의 책무(제3조),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제4조),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제5~6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팜 시설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유통·기술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함께 예산 지원 및 민간위탁 절차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지역 내 연구기관·대학·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의 마련으로 향후 정책 실행력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 지역 내 스마트농업의 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 달성형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

- 사업비 : 75,000천원(군비 52,500 / 자부담 22,500)  
    개소당 : 15,000천원(보조 10,500 / 자부담 4,500)
- 사업대상 : 시범농가 5호(고정식 시설원예작물 재배농업인)
- 사업내용 : 통신망을 활용한 스마트폰 연계 장비·시설 지원
- 지원범위 : 데이터수집 장비, 외부내부 계측센서,  
    모니터링 장비(CCTV, 웹카메라),  
    공기유동 장비(가습·제습, 열풍기 등),  
    부대 장비 및 시설(자동관비시스템, 무인 방제기 등).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666호
- 발 의 일: 2025년 6월 5일
- 발 의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는 군 체육진흥협의회에 군 의원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 정비
-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 신설(안 제2조의2)

-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정비(안 제5조~제8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위원회이므로 지방의회가 논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비롯하여 전국 8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직 구성에 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위촉직 요건에 군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또한,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기타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체육 관련 조례 간 충돌이 없는지 검토하여 군 체육 관련 조례가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본 조례가 기본 조례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끝으로, 협의회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등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668호
- 발 의 일: 2025년 6월 5일
- 발 의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2. 제안사유

- 보도 점자블록의 노후화 및 부적정한 설치로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점자블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제3조)
-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검토의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점자블록 따라 가면 네거리 한복판으로 가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수집된 ‘점자블록’ 관련 민원 2,847건 (2018~2020, 3년간)
    1. 점자블록 파손·훼손(1,257건)
    2. 불법주차 차량 및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록을 침범(603건)

3.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요구(596건)

4. 잘 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325건) 등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2023년 말에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실태를 조사<sup>1)</sup>한 결과 대구광역시의 경우 미설치율 0%로 모든 곳이 설치되었으나 부적정 설치율이 100%로 설치한 모든 점자블록이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점자블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로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전국 시·도, 시·군·구청 277개와 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지부 및 회원단체 60개소 건물에서 300미터 반경내 횡단보도 점자블록을 조사

※ 참고 - 지역별 대상시설 인근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설치현황

지역별 대상시설 인근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현황

지역명	조사 대상지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 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513	3	0.6%	389	75.8%	121	23.6%
경기도	1328	67	5.0%	1160	87.3%	101	7.6%
경상남도	412	11	2.7%	346	84.0%	55	13.3%
경상북도	537	5	0.9%	339	63.1%	193	35.9%
광주광역시	164	2	1.2%	117	71.3%	45	27.4%
대구광역시	192	0	0.0%	192	<b>100.0%</b>	0	0.0%
대전광역시	292	9	3.1%	260	89.0%	23	7.9%
부산광역시	420	11	2.6%	366	87.1%	43	10.2%
서울특별시	961	168	17.5%	759	79.0%	34	3.5%
세종특별자치시	32	0	0.0%	23	71.9%	9	28.1%
울산광역시	126	0	0.0%	124	98.4%	2	1.6%
인천광역시	252	1	0.4%	240	95.2%	11	4.4%
전라남도	716	0	0.0%	257	35.9%	459	<b>64.1%</b>
전라북도	274	1	0.4%	201	73.4%	72	26.3%
제주특별자치도	106	2	1.9%	87	82.1%	17	16.0%
충청남도	360	0	0.0%	299	83.1%	61	16.9%
충청북도	334	3	0.9%	268	80.2%	63	18.9%
합	7019	283	4.0%	5427	77.3%	1309	18.7%

○ 출처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3년 12월,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실태 조사

- 전라남도의 미설치율이 64.1%로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대구광역시의 부적정설치율이 100%, 미설치율이 0%로 모든곳이 설치되었으나 설치한 모든 점자블록이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669호
- 발 의 일: 2025년 6월 5일
- 발 의 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2. 제안사유

-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노동자의 범위를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문상 용어를 ‘경비노동자’ 에서 ‘관리노동자’ 로 변경
-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 전반에서 ‘경비노동자’ 용어를 ‘관리노동자’로 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까지 인권보호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현행 조례는 경비노동자에 한정하여 인권 보호 및 기본시설 제공,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근무 환경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원 등 타 직종의 노동자는 제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정의 조항의 정비로 ‘관리노동자’로 범위를 확장하여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인권보호 교육의 실시 근거를 관련 조례와 연계하고, 교육·홍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준용 규정을 명시하는 등 행정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인권존중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조례를 통해 관리노동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은 타당하며,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